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0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3.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운영 중으로 국가는 매년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가. 제정안의 취지 및 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지원의 대상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생략)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u>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u>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 ---- <u>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체험휴양마을협회의 자립 및 경쟁을 유도하고 관련 시장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한정하기보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의원안, 제2123716호)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전체회의에 상정(2023. 9. 15.)되었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라. 검토의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는 현행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이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1,195개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있음.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현황]

(‘23년 말 기준, 개소)

구분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수	7	1	6	5	5	3	112	220	79	134	150	175	131	141	26	1,195

※ 광역시 소재 체험·휴양마을은 인근 도(道)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로 가입 유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8.16.제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및 매출액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2021년까지 급감하였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관광 수요의 감소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체험마을 프로그램이 대부분 농산물 수확과 농사체험, 향토음식 만들기 등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민의 관심을 끌거나 기 방문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및 매출액 현황]

(개소, 만명,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마을 수	1,115	1,151	1,175	1,178	1,195
방문객 수	1,307	656	731	928	1,125
매출액	104,707	62,373	65,958	85,661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8.16.제출, 2023년 자료 미제출

이러한 상황하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기획, 적극적 홍보 및 마케팅, 우수 체험관광 사례의 공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역량 교육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실제 농어촌 현장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 협동체인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전국단위 1개소, 道단위 9개소 설립·운영 중)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개요 및 역할]

- **(운영현황)**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 1개소(농식품부 설립허가)와 도별 협의회 9개소(道 설립허가, ‘11~’12년)가 설립되어 운영 중
* 9개 道 협의회(회장 9명, 직원 19명), 1개 전국 협의회(회장 1명, 직원 2명)
- **(주요역할)** 체험휴양마을 회원의 사업경영과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정보교류, 지도자(위원장, 사무장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체험관광 사업 운영 등
- **(운영방식)** 협의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국비, 지방비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며, 그 외 운영비 등은 회비와 사업비 등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 중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8.16.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예산편성을 통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각각 보조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와 달리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지속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어왔고, 2024년 협의회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바 있음.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예산지원 현황]

(단위: %)

구분				~'23	'24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사무장활동비	지방	국비	50%	0%
			지방비	30%	70%
			자부담	20%	30%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사무장활동비	전국	국비	100%	0%
		지방	국비	50%	0%
			지방비	50%	100%
		공동협의체육성사업(사업비)		국비	100%

※ '24년도 예산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관련 예산 미반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8.16.제출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1	'22	'23	합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사무장활동비	54.9	54.8	57.0	166.7
농촌체험·양마을 협의회	사무장활동비	2.5	2.6	2.8	7.9
	공동협의체육성사업	2.2	2.2	2.2	6.6
	소계	4.7	4.8	5.0	14.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8.16.제출

이에 개정안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안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각 호로 분리하는 등의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지방보조금법」 제6조¹⁾는 지자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국비 뿐 아니라 지방비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계속 지원할 경우 개정안처럼 “관련 단체”로 규정하기 보다 개정안에 동 협의회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1) 「지방보조금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417

별첨 1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단체 및 지원현황

□ 관련 단체 현황

- **(운영현황)**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 1개소(농식품부 설립허가)와 도별 협의회 9개소(道 설립허가, '11~'12년)가 설립되어 운영 중
* 9개 道 협의회(회장 9명, 직원 19명), 1개 전국 협의회(회장 1명, 직원 2명)
- **(주요역할)** 체험휴양마을 회원의 사업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정보 교류, 지도자(위원장, 사무장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체험관광 사업 운영 등
- **(운영방식)** 협의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23년까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 받았으나, '24년부터는 지방비와 사업비 등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 중

□ 운영비 지원현황 ※ 국비 지원 기준으로, 지자체 별도 지원은 미포함

- **(직접 운영비 지원종료)** '23년까지 10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사무국 직원(21명)의 인건비를 사무장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
* (전국 협의회) 2명, 국비 100% / (도별 협의회) 2~3명, 국비 50% + 지방비 50% / 회장은 명예직
* 지원기준: 2023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기준(201만원 기준) / '23년 기준 국비: 277백만원
- **(간접 운영비 지원)** '24년부터는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자립 및 역량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간접 지원 중
* **농촌크리에이투어(CREATOUR):** 20개소, 개소당 2.5억원, 국비 50%(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역의 우수 농촌체험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테마상품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사무장활동비 지원('06년~'23년)

- (사업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분야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500여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23) 5,979백만원 = 500명 × 월 201만원(최소인건비) × 12개월 × 국비50%

■ 체험마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4년 사무장활동비 지원 폐지

■ 연도별 사무장활동비 지원현황

- ('06년) 국비 600백만원(100명)→('13년) 2,801(390)→('18년) 4,485(475)→('23년) 5,979(500)

별첨 2

농촌체험휴양마을 개요 및 운영현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개요

- **(정의)**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운영하는 마을협의회
- **(근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도농교류법)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 **(지정주체)** 시장·군수·구청장(농촌마을은 농식품부, 어촌마을은 해수부에서 소관)
- **(지정요건)** 도농교류법 시행령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요건(도농교류법 시행령 제2조, 지정요건)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세부내용>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 (운영현황) ('23년 말 기준): 1,195개 소

구분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수	7	1	6	5	5	3	112	220	79	134	150	175	131	141	26

○ (최근 5년간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현황)

(단위 : 개소, 만명,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마을 수	1,115	1,151	1,175	1,178	1,195
방문객 수	1,307	656	731	928	1,125

* '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발생

체험마을협의회 지원현황(2024년 기준)

체험마을 협의회	지원 인원(명)	'24년 지원 내역	'24년 지원 비율	비고
전국	-	없음	-	직원 2명
경기	2	2,061천원('24년 최저임금) x12개월	도 100%	
강원	15	2,061천원x12개월	도협의회(2명) : 도 100% 시군협의회(13명) : 도 10% 시군 70% 자부담 20%	
충북	2	2,061천원x12개월	도 34%, 시·군 49%, 자부담 17%	
충남	2	2,070천원x12개월	도 20%, 시·군 40%, 자부담 30%	
전북	2	2,061천원x12개월	도 100%	
전남	2	2,060천원x12개월	도 25%, 시·군 55%, 자부담 20%	
경북	2	2,061천원x12개월	도 100%	
경남	2	2,061천원x12개월	도 100%	
제주	2	2,061천원)x12개월	도 100%	
10개소	31	-	-	-

※ '24년부터 국비 보조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중